

# 예산총칙

2020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72,662,609	17,179,878
일반회계	500,848,365	15,025,451
특별회계	71,814,244	2,154,427
공기업특별회계	49,531,128	1,485,934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35,857,444	1,075,723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13,673,684	410,211
기타특별회계	22,283,116	668,493
주택사업특별회계	36,962	1,109
농어촌뉴타운특별회계	741,860	22,256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3,681,568	110,44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2,000	660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381,050	41,432
농수산진흥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6,432,253	192,968
자활기금특별회계	1,549,300	46,479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087,774	32,633
주차장사업특별회계	831,580	24,947
수질개선특별회계	6,192,939	185,788
도시개발특별회계	325,830	9,775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사업은 해당없음.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5,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321억원으로 한다.

제 8 조 다음 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 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2. 재무활동경비    3.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4.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